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97,510,535	80,925,316
일반회계	2,466,257,474	73,987,724
특별회계	231,253,061	6,937,592
공기업특별회계	187,798,531	5,633,95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7,139,376	2,614,18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659,155	3,019,775
기타특별회계	43,454,530	1,303,636
주택사업특별회계	98,000	2,9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818,143	414,544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2,116,024	63,481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079,904	92,397
교통사업특별회계	22,049,568	661,487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	150
수질개선특별회계	2,210,875	66,32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7,016	2,310

제 2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6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70,320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12,5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